

디엘이앤씨 협력사 행동강령



서 문

디엘이앤씨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구자적인 기업으로 협력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엘이앤씨는 협력사가 지켜야 할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윤리경영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디엘이앤씨 협력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디엘이앤씨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에 적용되며, 디엘이앤씨 또는 디엘이앤씨가 지정한 외부기관이 협력사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및 실사를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검토하여 개정 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디엘이앤씨 협력사 포탈 어깨동무¹⁾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포탈 어깨동무

<http://partner.dlenc.co.kr>

제 1 장 노동 인권

협력사는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여 사내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추구한다.

1. 노동관계법 준수

- 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나) 아동 노동을 비롯한 강제 및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한다.
- 다)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임금 및 복리후생

- 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생활 임금 이상의 보수와 법정 수당을 보장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 나) 협력사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3. 인도적 대우

- 가)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한다.
- 나)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학대, 폭언 등 일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한다.

4. 차별 금지

- 가)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차별을 하

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5. 채용

가) 협력사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임직원에게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 및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협력사가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대행업체(Recruitment agencies)를 활용한다면, 대행업체가 공정하게 임직원을 채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항공, 비자, 신체검사, 보증보험 등)을 구직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2 장 보건 안전

협력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1. 산업안전

가)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회사 내 안전근로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험에 대비한다.

다)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2. 산업위생과 보건

가) 근로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근로 및 휴식 환경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제공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한다.

3. 비상사태 대응

- 가) 비상사태 및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 위해 요소들에 대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통제력을 강화한다.
- 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계획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제 3 장 환경

협력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지속하여 사업활동 전반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1. 환경법규 준수

- 가) 환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 나)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서를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관련 허가서의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 가)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한다.
- 나) 대기 배출가스, 폐기물, 유해물질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배출 및 발생을 최소화한다.
- 다) 에너지, 물 등의 자원 소비 전반을 관리하고,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여 소비를 최소화한다.

3. 유해물질

- 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해당 물질에 라벨을 표기하여 관리한다.
- 나) 유해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 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친환경 건설

가) 협력사는 건설 과정 전반에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프로젝트 준비과정에서부터 친환경 공법에 대한 적용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환경 점검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나) 협력사는 친환경 건설을 추구하기 위해 친환경 건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윤리

협력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서 부당 행위 및 부패 등의 윤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윤리 수칙을 따른다.

1. 사업 청렴성

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나)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공정거래

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거래행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선의의 거래를 위반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금한다.

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간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3.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가) 협력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기술, 노하우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디엘이앤씨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나) 디엘이앤씨는 협력사 및 2차 협력사의 모든 물적,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공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한다.

1. 경영진 참여

- 가) 협력사는 '디엘이앤씨 협력사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및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서약을 하고, 해당 행동강령을 현지어로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 나) 협력사는 경영시스템 이행의 결정책임자인 협력사 고위 경영진 및 대표를 명시하고, 고위 경영진은 경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 가) 본 규범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 나) 협력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물리적 통제 수단을 실행하여야 한다.
- 다) 협력사는 노동, 보건, 안전, 환경, 윤리 등의 측면에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 목표를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라) 협력사는 규제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3. 공급사 선정 및 관리

- 가) 협력사는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품질을 비롯해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협력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사회, 환경적 리스크를 점검하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